

96200 안내시설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절은 각종 공원안내, 조경시설 안내, 게시판, 표시판 시설 등의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의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이절에 서술되지 않은 개개의 안내시설물에 대한 시방사항은 이절을 기본체계로 하여 발주시방이 필요할 경우 수정 또는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 재료
2. 안내시설 제작 및 설치

1.2 관련 시방절(SECTION)

- 1.2.1 22200 터파기
- 1.2.2 24200 되메우기
- 1.2.3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 1.2.4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 1.2.5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 1.2.6 97100 목재시설
- 1.2.7 97200 철재시설

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해당규격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3.2 건교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13장 옥외 장치물의 제1절 일반사항 및 제2절 안내시설

1.3.3 한국토지공사 CI 규정집(1996)

1.4 제출물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량 및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 제출항목의 가감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필요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1.4.2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견본 목록의 가감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 안내시설자재:

1.4.3 품질시험 성과표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 또는 자재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제품자료

1.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절의 "1.7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목록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4.5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 1.5.1 안내시설 제작 및 설치작업에 사용될 자재중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우려가 있는 자재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5.2 당해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눈, 비,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 요구사항

- 1.6.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안내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1.6.2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이하에서는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안내시설 제작 또는 설치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7 타공종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안내시설 설치작업 시행전 각종 포장공사, 식재공사의 작업과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 절에 따라 사전에 협력조정하여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의 구비요건

1. 목재재료

『97100 목재시설』 절의 " 2.1.1 목재" 및 "2.2 마감" 에 따른다.

2. 철재재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3. 비철금속재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4. 도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5. 기타재료

별도 발주설계도 및 발주시방에 따른다.

2.2 자재 허용차

(자재에 대한 허용차 사항 있을 경우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르며 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 2.3.1 수급인은 현장반입 제품 및 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및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2.3.2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05310 재료 및 기기』에 따른다.
- 2.3.3 수급인은 공장에서 제작하는 시설물의 경우 감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장제작에 대한 공장검수를 받아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안내시설물의 도안 및 표면처리

- 1. 안내판의 표기, 도안 및 색상이 설계도 및 시방에 명시가 없을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 판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3.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철판, 스텐레스판, 황동판, 알루미늄판 등)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발주설계도 및 발주시방에 따른다.
- 4.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 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절한 보호양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 6.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에 제작공장의 시설을 검수받아야 한다.

3.1.2 제작

- 1. 안내시설 제작은 『97100 목재시설』과 『97200 철제시설』절에 따른다.
- 2. 안내시설이 기성제품일 경우 제조업체의 제작사양에 따른다.
-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1.3 설치시공

1.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철근가공 및 조립,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22200 터파기』, 『24200 되메우기』,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절에 따른다.
2. 안내시설물 설치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 안내시설이 기성제품일 경우 제조업체의 설치사양에 따른다.
4. 설치후에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 3.2.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2.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